

여론조사기관·단체 관계자 대상

#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설명회 자료

2017. 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01

---

#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1팀장 - 정인학



# 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

## 1 사전신고 개요

가. 신고대상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 ◆ 선거여론조사 개념 ◆

-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ex)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당내경선 후보자중 누가 후보자로 적합한지

ex) 당내 유력주자 중 대선후보적합도 조사

ex) 국회의원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 교체의사에 대한 여론조사

나.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전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의무 없음.

-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
-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 신고의무자**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

◆ 사전신고 예외대상 ◆

- ①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 ※ 다만,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 ※ 제3자(후보자 등)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한 경우 의뢰를 한 제3자(후보자 등)가 신고
- ②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③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④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 ※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라 결정함(기준 § 20③).
  - ※ 신고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구·시·군의 지역신문사는 신고 대상임.
- 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 ⑥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⑦ 위 ③~⑥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 '관리·운영'이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함.
- ⑧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중앙심의위원회가 매년 1월중 결정·공표
  - ※ 2017년(적용기간 2017. 2. 1. ~ 2018. 1. 31.)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 NAVER, Daum, 엠에스엔, OSEN, NATE, 오마이뉴스, 줌

**라. 신고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

**마. 신고방법** : 서면으로 신고

- ※ 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음.
-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신고의무자인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식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자료실

## 바. 신고처

- 중앙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관할 시·도심의위원회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2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 가. 작성예시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b>1. 신고인 인적사항</b>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홍길동	1900년 0월 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00로 0	02) 00-0000	예비 후보자		
<b>2. (조사기관·단체)·(선거여론조사기관)</b>						
가. (조사기관·단체명)·(선거여론조사기관명) : ◇◇◇ 리서치						
나. 대표자 성명 : □ □ □						
다. 사무소소재지(주소) : 서울시 강남구 00로 0 (전화번호 : 02-▽▽▽-▽▽▽▽)						
<b>3. 조사 목적 : 00선거(00선거구명) 예비후보자 지지도 조사</b>						
<b>4. 조사 방법 등</b>						
조사지역	조사일시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피조사자 선정방법	공표·보도 여부	기타
전국	2017. 3. 12, 10:00~21:00 2017. 3. 13, 15:00~20:00	1,000명	전화면접조사 (유무선 병행)  전화자동응답 (ARS)조사 (유무선 병행)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할당 ·RDD(유선, 무작위 추출) ·휴대전화 가상번호(무선)  ·자체구축 DB ·전체 규모 : 15만명 ·구축방법 : 자사 온라인 회원가입	여, 부	
<b>5. 전체 설문내용 : 별지 첨부</b>						
<p>2017년 0월 0일 실시하는 00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7년 0월 00일 신고인 홍길동 인</p>						
00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 나. 작성요령

기재항목	기 재 요 령
신고인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li> <li>※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 실시하는 경우 신고인 인적사항 기재 생략</li> </ul>
조사기관 ·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단체명(선거여론조사기관명 포함),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li> <li>▶ 기관·단체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심의위원회 등록여부에 따라 선택</li> </ul>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li> </ul>
조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 기재</li> </ul>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li> <li>▶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 기재</li> <li>※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에는 여론조사 실시 금지</li> </ul>
표본의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li> <li>※ 공표보도로 신고한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5항(대선(2 이상 사도에 한함) 또는 전국단위 1,000명 / 광역단체장선거 또는 시도 단위 조사 800명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500명 / 지역구지방의원선거 300명)의 최소 표본 크기 확인</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li> <li>① 직접(대인)면접조사</li> <li>②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li> <li>③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li> <li>④ 우편조사, ⑤ 표적집단면접조사</li> <li>⑥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based-survey)조사 등으로 구분]</li> <li>⑦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⑧ 그 밖의 조사방법</li> </ul>
피조사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조사자를 표본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li> <li>▶ 전화면접조사·전화자동응답(ARS)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li> <li>▶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 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기재</li> <li>▶ 비공표·보도용 여론조사도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 선정해야 함.</li> </ul>
공보·보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언론기관 등을 통해 공표·보도하는지 여부 기재</li> <li>※ 다음의 경우 공표·보도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여론조사</li> <li>- 심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 해당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해당 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li> </ul> </li> <li>-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li> </ul> </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되는 그 지역 또는 집단의 명칭 기재</li> </ul>

### 3 질문지 작성시 유의사항

- ①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 고지  
 ex)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리서치입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02-○○○-○○○○  
 입니다, 저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 선정  
 ※ RDD조사의 경우 19세 미만을 선택하는 항목 필요
- ③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질문내용 금지  
 ㉠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표현 또는 질문순서

#### ◆ 위반사례 ◆

- ▶ 부정적 어휘를 사용하여 특정후보에게 편향되도록 문항을 작성한 경우  
 ex)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했고 ○○대 교수인 ☆☆☆후보  
 ex) “○○ ~○○ 간 고속전철의 ○○△△ 연장의 실패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부정(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질문에 이어 정당(후보자) 지지도를 묻는 문항을 배치한 경우
  - ① 특정 정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응답항목으로 구성된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 이후에 정당지지도를 묻는 문항을 배치한 경우  
 ex) 정당지지도 조사 설문  
 문1, A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 귀하께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 ② 특정 후보자의 치적이나 업적을 평가하거나 부각한 질문 이후에 후보지지도를 묻는 문항을 배치한 경우  
 ex) 현 국회의원이 중점추진한 고속전철 연장사업이 최근 폐기된 상황  
 문1, A시~B시 간의 고속전철 연장 실패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2, 귀하께서는 현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 ▶ 특정 후보자에 대한 주요경력이나 학력 등이 포함된 인지도 문항, 호감도 문항으로 특정 후보자를 반복적으로 각인시킨 이후에 후보지지도를 묻는 문항을 배치한 경우  
 ex) 문1, 귀하는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A당 △△시 당협위원장 ○○○를 아시나요?  
 문2, 귀하는 A당 △△시 당협위원장 ○○○에 대해 얼마나 호감있으신가요?  
 문3, 귀하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

◆ 위반사례 ◆

- ▶ 특정 후보자가 출마지역 출신임을 강조하기 위해 출신 고등학교 등이 비교될 수 있도록 문안을 작성한 경우

ex) A시 국회의원선거 관련 후보자 인지도조사 설문

문1. A시 ○○고 출신의 ☆☆☆후보를 알고 계십니까?

문2. B시 △△고 출신의 ○○○후보를 알고 계십니까?

㉕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 위반사례 ◆

- ▶ 특정 후보자의 경력 다수를 나열하여 부각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ex) ○○○후보자의 경력 중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경력을 물으면서 응답 항목으로 주요 경력을 제시

- ▶ 현역 국회의원의 수상경력, 의정활동 성과 등을 홍보하는 경우

ex) ○○○ 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㉖ 비방하는 내용 또는 허위의 사실 포함 질문

◆ 위반사례 ◆

- ▶ 특정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명의 성명 허위 기재

ex) 군수 예비후보자 중 특정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자 3명의 성명을 허위로 기재

- ▶ 허위 경력 기재 여론조사 실시

㉗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및 소속 정당 허위 표시

㉘ 유력 정당(후보자) 제외 여부 등 조사대상자 선정의 부적정

◆ 위반사례 ◆

- ▶ 가상 여론조사라는 명목 하에 조사시점에서 볼 때 개연성이 전혀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경우

ex) ○○○ 현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 후보자가 공천을 받았을 경우 이번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 ▶ 유력후보자를 제외하고 특정 후보자와 군소 후보자만을 지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한 경우

- ▶ 불출마의사를 명백히 밝힌 자를 지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한 경우

- ▶ 타선거구의 후보자를 지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한 경우

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히거나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외

◆ 위반사례 ◆

- ▶ 특정 후보자 또는 현역 국회의원을 응답항목 1번으로 고정하고 여타 후보들은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
- ▶ 예비후보자 등록 순서로 보기항목을 구성한 경우
- ▶ 후보자등록기간 이전에 실시되는 조사에서 임의로 정한 후보자기호 순 등으로 한 경우

㉕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된 경력 또는 직업 이외의 경력·직업을 사용하는 지 여부

④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행위 금지

◆ 위반사례 ◆

- ▶ 후보지지도 조사에서는 '지지후보 없음' 응답항목을 포함하였으나 후보적합도 또는 후보선호도 조사문항에서는 적합후보 없음 또는 선호후보 없음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 후보지지도와 정당지지도 조사를 하면서 응답항목에 '모름/무응답' 항목은 포함하였으나 '지지 후보(정당)없음' 항목이 별도로 없는 경우

⑤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규칙으로 정한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금지

⑥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금지

**4 벌칙**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한 때 ➡ 과태료 1,000만원

-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 때 ➡ 과태료 750만원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500만원
-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였으나 여론조사 내용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250만원

02

---

## 휴대전화 가상번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3팀장 - 유석준



#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하 '가상번호'라 함)

3팀장 유석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목 차

1. 가상번호 관련 주요 업무 일정
2. 가상번호 처리 흐름도
3. 가상번호 제공 요청(I, II, III, IV)
4. 가상번호 생성 및 제공
5. 비용 납부
6. 가상번호 수 조정
7. 홈페이지 운영 매뉴얼
8. 제한 및 금지행위
9. 기타 협조 요청사항

## 1. 가상번호 관련 주요 업무 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 24.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 25. ~ 3. 6.	이용자에 대한 제공사실 등 고지 기간	이동통신사
3. 7.까지	가상번호 비용 공고	중앙심의위원회
3. 7. ~ 3. 11.	제공거부 의사 표시 기간	이용자
3. 9.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접수 시작 ※ 다만, 이동통신사의 생성기간(7일)을 고려하여 3. 20.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부터 사용 가능	관할 심의위원회

## 2. 가상번호 처리 흐름도



### 3. 가상번호 제공 요청(I)

#### 1. 요청권자

- 법 제8조의9에 따라 관할 심의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사기관  
(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함.)
- ※ 법 시행일(2017.2.8.)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기존 여론조사 기관·단체도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간주함

#### 2. 요청목적

- 공표 또는 보도를 위한 선거여론조사

#### 3. 요청기한

-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 ※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거부 의사 표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부터 요청 가능

### 3. 가상번호 제공 요청(II)

#### 4. 요청방법

- 가상번호 제공요청서를 이동통신사별로 작성하여 관할 심의위원회로 제출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접수·처리

관할 심의위원회	중앙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시·도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3. 가상번호 제공 요청(Ⅲ)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수신 : ○○이동통신사  
 접수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사용할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선거명(선거구명) 및 여론조사 목적·내용 : \_\_\_\_\_  
 2. 여론조사 대상지역 : \_\_\_\_\_  
 3. 여론조사 기간 : \_\_\_\_\_  
 4. 여론조사 대상자 수 : \_\_\_\_\_  
 5. 제공요청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 : \_\_\_\_\_

**이동통신사별 요청 총수는 대상자 수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음**

연령별·성별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비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 계															
...															

**기관명과 대표자명 모두 기재**

6. 휴대전화 가상번호 담당자 (후 당내경선·경당활동)

직위	성명

붙임 : 여론조사 관련 자료 부

년 월 일  
 신청인  선거여론조사기관 대표자

### 3. 가상번호 제공 요청(Ⅳ)

####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하단“주”

- ① “여론조사 대상 지역”은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선거구 단위로 적으며 각각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② “제공요청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이동통신사별로 작성하되, 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 대상자수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③ “연령별·성별”의 ‘20대’ 칸에는 19세를 포함하여 작성함.
- ④ “지역별”은 다음과 같이 작성
  - 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도 단위
  - 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자치구·시·군 단위
  -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구 단위
- ⑤ “여론조사 관련 자료”는 여론조사의 목적, 일정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 계획 개요, 여론조사 설문요지 등을 말함.

## 4. 가상번호 생성 및 제공

### 1. 주체

이동통신사업자

### 2. 기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3. 제공시기

여론조사 개시일

### 4. 제공방법

- 유효기간 설정은 10일 이내로 설정(요청서에 기재된 여론조사 기간)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게시판을 통해 제공
- 자세한 매뉴얼은 별도 제공 자료 참조
- 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장소를 지정하여 제공

## 5. 비용 납부

### 1. 비용: 1건 1일당 16.5원 예정

- 가상번호 1개를 20일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20일보다 짧은 경우 일할계산

### 2. 납부 시기

- 가상번호를 제공받기 전까지 납부

### 3. 납부 방법

-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정한 방법

## 6. 가상번호 수 조정

### 사유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수 부족 등 제공할 수 있는 가상번호 수가 제공해야 하는 가상번호 수 보다 적을 때



## 7. 홈페이지 운영 매뉴얼

## 7. 홈페이지 운영 매뉴얼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아이디: company  
비밀번호: \*\*\*\*\*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존 참여 예정자일 시이름을 클릭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없으신가요?

## 7. 홈페이지 운영 매뉴얼

홈페이지 메인 메뉴 중 '등록마당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클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마당    일일마당    도움마당    참여마당    위원회 소개

비밀조사결과 등록	등록기관 현황	공지사항	별종장 여론조사 신고	위원회 인사말
<b>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b>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	자료실	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동심비 잠인번호 등록	심의·조치 내역	FAQ	오시는 길	
	인용불가 현황	별종장 여론조사 사례		
	기소·구형 현황			

동심비 잠인번호 등록

검색

전체리스트로 돌아가기

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등록일	조회수
----	----	-----	-----	-----

## 7. 홈페이지 운영 매뉴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홈 > 등록이당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해당 게시판 접속 → ① 제공받은 고유 번호와 동일한 제목의 게시물 클릭 → ② 비밀번호 입력창에 제공받은 비밀번호 입력후 '확인' 클릭

총 1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번호	관할기관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	중앙	① 중앙-2017-<테스트>	이승희	2017-02-20	17

② 비밀번호 [ ] : 확인

## 7. 홈페이지 운영 매뉴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홈 > 등록이당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중앙-2017-01

번호	685	관할기관	중앙						
작성자	오경숙	작성일	2017-02-20						
첨부파일	<table border="1"> <tbody> <tr> <td>SKT</td> <td>가상번호 명부_SKT.xlsx</td> </tr> <tr> <td>KT</td> <td>가상번호 명부_KT.xlsx</td> </tr> <tr> <td>LG U+</td> <td>가상번호 명부_LGU+.xlsx</td> </tr> </tbody> </table>			SKT	가상번호 명부_SKT.xlsx	KT	가상번호 명부_KT.xlsx	LG U+	가상번호 명부_LGU+.xlsx
SKT	가상번호 명부_SKT.xlsx								
KT	가상번호 명부_KT.xlsx								
LG U+	가상번호 명부_LGU+.xlsx								

통신사별 첨부된 가상번호 명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조사에 사용  
※ 가상번호 명부 파일은 조사 시작일 오전에 다운로드 가능함

## 8. 제한 및 금지행위

-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유효기간이 지난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않은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9. 기타 협조 요청사항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회원가입
- 가상번호 요청서를 팩스(0505-058-1175)로 제출 시 정상 수신여부 확인
- 가상번호 요청 시 일부 이동통신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작성
-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사내 가상번호 전담 직원 별도 지정
- 여론조사 실시 기간이 2일 이상의 경우 요청
- 제출기한 준수 (당해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 비용 청구 및 수납 등을 위하여 요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제출 요망 (통신사 요청 사항)



# 03

---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및 위반행위 조사·조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4팀장 - 정지미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정지미

## <목 차>

- I.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 II. 위반행위 조사·조치
- III. 질의응답



## I.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 제도 개요

- 시행시기 : 2017. 5. 9.(화)
- 내 용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 불가

# 등록신청

● 시 기 : 2017. 5. 9.(화) 부터

※ 3. 20.(월)부터 사전제출 가능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 접수처 : 여론조사 기관·단체 소재지 관할

시·도심의위원회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여론조사기관 단체명	·연립년도 :		
사무소 소재지	·주소 : m <sup>2</sup> ·면적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조사시스템 내역	시스템명 사선후보		
상근 직원 현황	·분석전문인력 : 명 ·일반직원 : 명		
여론조사 실적 매출액	·1년 미만 : ·1년 이상 : ·매출액 :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선거여 론조사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조사시스템 보유 확인서 1부, 2. 상근 직원 근무 증명서 1부, 3. 사무소 보유 증명서 1부, 4. 여론조사 실적 증명서 1부, 5. 매출액 거래금영 확인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록 요건

###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 구비서류

- ☞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장비의 구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등록 요건

### 2.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함)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 구비서류

- ☞ 상근 직원 : 최근 3개월간 납부한 4대 보험 증명서류
- ☞ 분석전문인력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 증명서

## 등록 요건

### 3.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록신청일 기준)

- 실시실적 - 설립1년 미만 : 3회(선거여론조사 제외) 이상  
- 설립1년 이상 : 10회(선거여론조사 포함) 이상
- 매출액 -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구비서류

- ☞ 여론조사 실적 증명서류  
여론조사(선거여론조사 포함)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 등
- ☞ 매출액  
거래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사본

## 등록 요건

### 4. 조사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 구비서류

- ☞ 사무소 소재지 약도 첨부
-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사항증명서(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제출

## 제도 개요



## 등록신청서 사전 제출

- **기 간** : 2017. 3. 20.(월) ~ 5. 8.(월)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출장소** : 여론조사기관·단체 소재지 관할  
시·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요청사항** : 검토서류 조기제출

## 선거여론조사기관 정보 홈페이지 공개

- **시 기** :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가 있는 때
- **방 법**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대상 정보**
  -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록연월일
  -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사실

## 변경 등록

- **대 상** :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선거여론조사기관
- **시 기** : 변경이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
  - ※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제때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II. 위반행위 조사·조치

###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조사 일반

- 조사 근거 : 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 조사 주체 : 중앙 및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
- 조사권의 발동
  -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에 관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후보자(경선후보자 포함)·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 조사 대상 :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혐의 관계인

##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조치

### ●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조치

### ● 행정조치

-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경고 등

### ● 고발 등 조치

#### - 고 발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고발한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 불가**(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 확정시 공표·보도 가능)

#### -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질 의 응 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감사합니다!**

---

# < 메 모 >

---

---

# < 메 모 >

---